

「제2차 중견기업 혁신펀드」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중견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전문펀드와 중견기업이 협력하여 조성하는 「제2차 중견기업 혁신펀드」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 개요

| 항 목 | 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위탁운용 금액 및 선 정 운용사 수 | <p>○ 총 300억원 이내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선정 운용사 수</th> <th>총 출자금액^{주1,2)}</th> <th>최소결성금액^{주2)}</th> <th>출자비율^{주2)}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</td> <td>300억원 이내</td> <td>500억원 이내</td> <td>60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1) 기술혁신전문펀드 200억원(확정), 지정출자자(예정) 100억원 주2) 위탁운용사 선정심사 완료시까지 지정출자자가 참여하지 않거나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, 축소되는 총 출자금액 비율만큼 최소결성금액의 비율도 동일하게 축소 예정 (ex, 지정출자금액이 40억원일 경우, 최소결성금액은 400억원)</p> | 선정 운용사 수 | 총 출자금액 ^{주1,2)} | 최소결성금액 ^{주2)} | 출자비율 ^{주2)} | 1개 | 300억원 이내 | 500억원 이내 | 60% 이내 |
| 선정 운용사 수 | 총 출자금액 ^{주1,2)} | 최소결성금액 ^{주2)} | 출자비율 ^{주2)} | | | | | | |
| 1개 | 300억원 이내 | 500억원 이내 | 60% 이내 | | | | | | |
| 출자대상 투자기구 | <p>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포함</p> <p>※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: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</p> | | | | | | | | |
| 운 용 사 신청자격 | <p>○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○ 공동 운용(CO-GP) 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</p> | | | | | | | | |
| 운 용 사 선정방법 | <p>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* 한국성장금융: www.kgrowth.or.kr (출자사업 공고)</p> | | | | | | | | |
| 접수일시 및 심사결과 발 표 | <p>○ 접수 : 2023년 7월 14일(금) 16:00까지 ○ 발표 : 2023년 8월 초</p> <p>* 주목적 투자대상, 출자조건 등 공고 조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앞 사전 협의 또는 문의 ※ 심사결과 발표는 지원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</p> | | | | | | | | |

| 항 목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|---|
| 접수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(8.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) ○ 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|
| 펀 드 결성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정일로부터 5개월* *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협의하에 연장 가능 |

2.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

- 투자대상은 국내 **중소·중견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*)**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

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하되,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

- 주목적 투자대상**

| 세부내용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 ①, 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^{주1)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래 세 가지 분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되, 이 중 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30% 이상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협력·수출확대를 추진하는 중견기업^{주2,3)} - 타 기업 및 타 기관(대학 소속 연구기관 등)과(의) 오픈이노베이션^{주4)}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- 중견기업과(의) 오픈이노베이션^{주4)}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② 우수 기술기업^{주5)}에 투자집행금액의 80% 이상 투자 <p>주1)단일 투자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</p> <p>주2)해외기업과의 M&A프로젝트 수행, 해외 수주, 해외기업과 또는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 R&D·기술협력 등</p> <p>주3)주목적 투자대상 부합여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해야 하며, 필요시 사후 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</p> <p>주4)기술 이전, 공동 R&D, 기술 사업화 등 기업 간의 기술 협력 활동(기술 구매, 기술 판매, 연구 위탁 계약, 합작 벤처 설립 및 투자, 기업 인수 등) (참고1)</p> <p>주5)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(TI5) 이상이거나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</p> |

3. 주요 출자조건

| 항 목 | 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운 용 사 출자비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정총액의 1% 이상* 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* 「상법」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운용사(이하 “LLC형 VC”)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※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
| 최 소 결성금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소 500억원 이상 주) 위탁운용사 선정심사 완료시까지 지정출자자가 참여하지 않거나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, 축소되는 총 출자금액 비율만큼 최소결성금액의 비율도 동일하게 축소 예정 (ex, 지정출자금액이 40억원일 경우, 최소결성금액은 400억원) | | | | | | | | | | | |
| 존속기간 | ○ 펀드 결성일(성립일)로부터 10년 이내 | | | | | | | | | | | |
| 투자기간 | ○ 펀드 결성일(성립일)로부터 5년 이내 | | | | | | | | | | | |
| 납입방식 | 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 | | | | | | | | | | | |
| 운용보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리보수 :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*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≤500억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≤1,000억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≤1,500억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,000억원<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결성일~2년 (약정총액 기준)</td> <td rowspan="2">2.2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1.7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1.2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1.0%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2년~만기 (투자잔액 기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결성일~2년: 약정총액 기준 / 2년 이후~존속기한: 투자잔액 기준 **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상기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○ 성과보수 : 기준수익률 7% 초과수익의 20% 이내 ※ 펀드별 보수 체계는 선정 시 상기 범위 내에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| 구 분* | ≤500억원 | ≤1,000억원 | ≤1,500억원 | 2,000억원< | 결성일~2년 (약정총액 기준) | 2.2% 이내 | 1.7% 이내 | 1.2% 이내 | 1.0% 이내 | 2년~만기 (투자잔액 기준) |
| 구 분* | ≤500억원 | ≤1,000억원 | ≤1,500억원 | 2,000억원< | | | | | | | | |
| 결성일~2년 (약정총액 기준) | 2.2% 이내 | 1.7% 이내 | 1.2% 이내 | 1.0% 이내 | | | | | | | | |
| 2년~만기 (투자잔액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핵 심 운용인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심운용인력 총 2인 이상* 참여 *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의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** 공동 운용의 경우, 각 운용사별 1인 이상이 참석해야 함 ○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○ 투자경력 3년*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, 전체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* 이상일 것 *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 가능하고 입증 가능 하여야 함 ○ 핵심운용인력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주목적 투자 완료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* 겸임을 제한 * 해당 명칭에 한정하지 않으며, 핵심운용인력에 준하는 지위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함 | | | | | | | | | | | |

| 항 목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펀드의 출자약정액 합산금액**은 1,000억원*을 초과할 수 없음 *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% 이상을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 완료(해당 펀드에 부여된 모든 주목적 투자비율을 충족해야함) 펀드는 미포함 ** 출자약정액 합산금액 = ∑(각 펀드의 약정총액/각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수) ○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기재 |
| 출자자 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사의 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 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○ 하기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하에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책기관 및 정책성 펀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- 해외출자자(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)가 참여하는 경우 |
| 수탁회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최종 펀드 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○ 펀드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|
| 회 계 감 사 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|
| 펀 드 전자보고 시스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|
| 기 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 ○ 비주목적투자 분야는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 필요 ○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(주목적투자분야(비율), 보수구조 등) 등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,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|

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출자자간 협의에 의해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5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**2023. 3. 31.(금)**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6.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제안심사 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

| 일자 |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'23. 6. 15.(목) |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| 홈페이지 공고 |
| '23. 7. 14.(금) | 제안서 접수 | 접수시간 : 10:00~16:00 |
| '23. 7~8월중 | 최종 선정 | 개별 통지 |
| '24년 상반기중 | 펀드 결성 완료 | 선정일로부터 6개월내 |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□ 지원방법

-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당일 지정된 접수시간 내 퀵서비스 등으로 비대면 제출
 - *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(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- 제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8부)를 제출
 - 분량 :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(제출 방법 및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)
-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협의(문의사항 집계 목적)

□ 출자 설명회

- 일시 : 2023년 6월 22일(목) 오후 2시
- 장소 : 한국성장금융 대강당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, SK증권빌딩 11층)
 - * 출자 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
 - ** 출자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운용사는 2023년 6월 20일(화)까지 하기(8.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) 메일주소로 참석인원 관련 정보(참석 인원수, 성함, 직급 등) 송부하여야 하며, 운용사별 참석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
 - *** 본 출자 설명회 외 별도의 대면 또는 비대면(온라인) 출자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

8. 접수처 및 문의 방법

- 접수처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2층)
- 문의방법 : 한국성장금융 산업금융1팀(02-2090-9173)
E-mail : jaeyi@kgrowth.or.kr

2023년 6월 15일

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

참고1

Open Innovation(개방형 혁신)의 유형

| 유형 | 내용 | 비고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내향형 개방 | 기술 구매 | 금전적 계약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구매 | 특허권 라이선싱이 대표적 |
| | 공동 연구 | 외부기관(주로 대학)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| 보통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수반 |
| | 연구 계약 (위탁 연구) | 특정 요소기술 확보나 시험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| 지적재산권의 공유는 없으며, 신약 개발에서 CRO가 대표적 |
| | 장기 지원 협약 | 대학 등과 연구성과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규모 연구비를 일괄 지원 | 보통 발생하는 특허의 지분이나 우선 실시권을 기업이 얻는 조건 |
| | 합작 벤처설립 | 타사와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| 합작 벤처는 제품 개발 완료 후 매각/인수를 통해 소멸되기도 함 |
| | 벤처 투자 | 신기술 탐색이나 우선 실시권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 | 다른 벤처캐피탈과 협력하거나 직접 벤처캐피탈을 설립 |
| | 기업 인수 | 유망 기술의 도입을 위해 기술을 보유한 기업(주로 벤처)을 인수 | 시스코, 피자사 등이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기업 |
| | 해결책 공모 | 기술적 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공모 | NineSigma 등 전문 사이트 활용 |
| | 사용자 혁신 | 사용자에게 개발 툴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 | 의료기기, 게임, 완구 등이 대표적 |
| | 집단지성 활용 | 다수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나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구 | 기술의 사적 소유권을 불인정, open source S/W가 대표적 |
| 외향형 개방 | 기술 판매 |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여 타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고, 로열티 수입을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 | 기업 내에 사정된 휴면 특허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, 처음부터 기술판매를 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음 |
| | 분사화 (Spin-off) |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기술에 대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를 추진 |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, 사업 다각화 모색,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 등이 목적 |

* 출처 : 기업 내 외부요인과 개방형 혁신활동 및 개방형혁신성공에 관한 실증연구(최위 정진섭, 기업경영연구, 2015)